

‘26. 7.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지 원 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49
----------	---------

제출연월일 : 2026. 7. .

제출자 : 김제시장

1. 개정이유

-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김제시 소관 각종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9조의2)
 - 위원이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함
 -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나.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 다. 예산수반 여부 : 부

- 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 : 여
-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 여부 : 여
-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 아. 입법예고 기간 : 2026. 5. 8. ~ 5. 28.(20일간)

4. 따로 붙임

- 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 라.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 마.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사. 관련 법령 발췌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 아.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발췌
 - 개선권고 관련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정비 대상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발췌서(무주군, 완주군)
- 자. 현행 조례
- 차. 방침결정문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u> <u>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u> <u>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 <u>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u>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 <u>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u>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u>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 <u>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u>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전북권 4대 도시로 준비하는 김제



김 제 시



수신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전북김제015)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행정지원과-12070 (2026.5.8.) 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임 검토의견 통보서 (2026A전북김제015) 1부. 끝.

교 육 가 족 과 장

서명생략

주무관 **야마에** 여성가족팀장 **최남** 대결 2026. 5. 15. 교육가족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교육가족과-17348 (2026. 5. 15.) 접수 행정지원과-12605 (2026. 5. 15.)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6906 팩스번호 063-540-4016 / tsajvm6@korea.kr / 비공개(5,7)
더 특별한 내일, 기희도시 김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전북김제015			
정 책 명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배석준	전화번호	063-540-322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5월 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행정지원과)	I. 개 요 ☐ 개정 목적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김제시 소관 각종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9조의2 신설) II.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5. 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7. 성별 통계 관련 조항 : 해당없음 8. 성별 통계 개선안 : 해당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5월 15일				
김제시 복지환경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이미애/063-540-6906)				
행정지원과장 귀하				

□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전북권 4대 도시로 준비하는 김제



김 제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 의견
조 회 결 과 보 고

행정지원과-11976(2026.5.8.)호와 관련하여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 의견 조 회 결 과 보 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회 기 간 : 2026.5.8. ~ 2026.5.15.(8일간)
2. 조 회 방 법 : 공문협의
3. 조 회 내 용 :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의견수렴
4. 조 회 결 과 : 제출 의견 없음. 끝.

주무관	배석준	시정담당	박무송	행정지원과장	전결 2026. 5. 18. 강태남
첨 조 자					
시 행	행정지원과-12761	첨 수			
우	5438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2층 행정지원과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229	팩스번호	063-540-1378	/ sunner23@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김 제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보고

행정지원과-11789(2026.05.06.)호와 관련하여,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5. 8. ~ 5. 28.(20일간)
2. 대상조례 :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조례 개정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의견수렴
5. 예고결과 : 의견없음. 끝.

주무관 **배여준** 시청팀장 **박무송** 행정지원과장 **전경 2026. 6. 1. 김예남**

함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3958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2층 행정지원과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229 팩스번호 063-540-1378 / summer23@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김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알림

기획감사실-8353(2026.6.22.)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최일시 : 2026. 6. 18.(목) 09:00
2. 개최장소 : 부시장실
3. 참석위원 : 10명 *대리출석 2명(경제진흥과장, 도시과장)
4. 심의안건 : 총 8건(조례 7, 규칙 1)
5. 의결결과 : 원안가결 8건

연번	심의 번호	소관부서	안 건 명	의결결과
계	총 8건 (조례 7, 규칙 1)			
1	2026-21	행정지원과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026-22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026-23	회 계 과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원안가결
4	2026-24		김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5	2026-25	투자유치과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2026-26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7	2026-27	환 경 과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2026-28	시립도서관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붙임 2026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각 1부. 끝.

김 제 시 장

수신자 김제시의회의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투자유치과장, 환경과장, 시립도서관장

주무관	이재현	의회법무팀장	이해라	기획팀장	대결 2026. 6. 22. 기획감사실장	전결
함초자					오경준	
시행	기획감사실-8398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8	/ kirus@korea.kr	/ 부문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획도시 김제

□ 관련 법령 발췌서 : 「부패방지권익위법」, 「행정기관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7호, 2023. 5. 16., 일부개정]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설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발채**

8.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

☐ **평가대상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문제점**

- ①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위원회의 경우,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 경기 안양시 등은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고, 경기 양주시 등은 개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여 특정 위원회의 특권 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장치 우회가 우려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 참여 배제 부실**
 - ※ (법령 입안·심사 기준, 법제처)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서 기피 대상 위원은 당연히 제척되므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확인적 규정을 둬
 - 충남 논산시 등은 **회피 규정이 없거나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
- ② 충남 서산시 등은 **해촉 규정 부재**로 직무상 비위를 저지르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격 사유가 있어도 위원직을 유지하는 부조리 발생
- ③ 충북 영동군 등은 위촉위원의 **임기·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거나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연임 제한을 하지 않아 장기 연임으로 인한 친소관계 형성 등 부패 우려
 - ※ (법령 입안·심사 기준, 법제처)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 “연임할 수 없다.” 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

□ 개선방안

- ① 경기 안양시 등은 각종 위원회 운영 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 제척 규정 신설 또는 제척 기준을 구체화
 - 기피 규정 신설,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기피 대상 위원은 의결 배제 등 규정 개선
 - 회피 규정을 신설하거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
- ② 충남 서산시 등은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 마련
- ③ 충북 영동군 등은 위촉위원 임기,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 마련

□ 타 기관 우수사례

■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 **참고자료 : 개선권고 관련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정비 대상**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기본조례 현황

(△ : 규정 미흡, × : 규정 없음)

연번	구분	적용범위	① 이해충돌방지			② 해촉	③ 임기,연임	
			제척	기피	회피		임기	연임 제한
1	군산시	별도규정 외 이 조례 적용						
2	익산시	별도규정 외 이 조례 적용	△	△	△			
3	김제시	별도규정 외 이 조례 적용	×	×	×			
4	남원시	별도규정 외 이 조례 적용	×	×	×		×	
5	완주군	별도규정 외 이 조례 적용						
6	진안군	기본조례 없음						
7	무주군	별도규정 외 이 조례 적용					△	
8	임실군	기본조례 없음						

□ **참고자료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발췌서(무주군, 완주군)**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2.01.11 조례 제2537호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에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2025.12.18 조례 제3473호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8.19 조례 제856호

(일부개정) 2020.07.14 조례 제1322호

(일부개정) 2023.11.13 조례 제1615호

(일부개정) 2025.11.17 조례 제181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11.17.>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김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김제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주민 의사의 반영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이미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절차)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괄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 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 관계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해당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시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히 자격을 규정한 경우,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야하거나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성별 비율을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0.07.14.>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용역·공사 금지) ①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특성상 제1항의 적용으로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위원회는 그 대상과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한다. 다만 각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5.11.17.>

1. 안건의 내용이 단순·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5.11.17.>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5.11.17.>

⑤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5.11.17.>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 2025.11.17.>

⑦ 서면회의로 진행하는 경우 서면회의 결과는 다음 회의 시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본항 신설 2025.11.17.>

제12조(위원회 정비)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난상황, 시급한 안전 처리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최하는 비대면 회의(화상회의 등)를 포함한다.<개정 2023.11.13.>

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전을 검토하여 문서의 형태로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11.13.>

3.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방침결정문

제1회임시헌법위원회추진위원회
비상하는김제시

문서번호	행정지원과 - 11464	주무관	팀 장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결 재
보존기간								
보고일자	2026. 5. 4.	배석준	정우용	정우용	정우용	이희재	정우용	
공개여부	부분공개	협 조	기획감사실장 이태훈 의회법무팀장 이희재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김 제 시
행 정 지 원 과